

# 이천시 공중화장실 설치 및 관리조례안 심 사 보 고

2005. 3. 25(금)  
산업건설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- 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5년 3월 10일 이천시장 제출
- 나. 회 부 일 자 : 2005년 3월 11일
- 다. 상 정 일 자 : 제77회 이천시의회(임시회)  
제1차(2005. 3. 24) 산업건설위원회 상정  
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의결

## 2. 제안설명요지(제안설명자 : 산업복지국장 윤희문)

### 가. 제정이유

- 2004년 7월 30일 「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」과 같은 법 시행령·시행규칙의 시행으로 상위법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공중화장실 등의 설치·이용 및 관리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는 것임.

### 나. 주요골자

- 공중화장실의 효율적인 유지·관리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관리 할 수 있도록 함(안 제6조)
- 청소기준, 대·소변기 소독 주기, 내·외부 도색주기 등 공중화장실 유지·관리기준을 정함(안 제9조)
- 시장이 옥외에 설치한 화장실은 상시 개방하도록 하고, 법인 및 개

인의 화장실에 대하여는 시설주와 협의하여 개방화장실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(안 제11조 및 제12조)

- 공중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은 장소에서의 행사 등에 참여하는 자의 편의도모를 위하여 이동화장실의 설치·관리기준을 정함(안 제14조 및 제15조)
- 유료화장실을 운영하고자 할 경우 법 제7조의 설치기준에 적합한 시설을 갖추고 시장에게 신고 후 유료화장실로 운영하도록 함(안 제16조)
- 공중화장실법 위반행위에 대한 과태료 부과 일관성을 위하여 위반행위별 과태료 부과기준을 정함(안 제18조)

### 3.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요지(전문위원 : 박규하)

- 시민의 위생편의와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하여,
- 제1조 내지 제4조는 목적과 정의 및 적용범위와 설치·관리자의 책무를 규정하였고,
- 제5조 내지 제7조는 설치기준과 효율적인 위탁관리를 할 수 있도록 관리인의 교육실시 등을 규정하였으며,
- 제8조 내지 제10조는 이용자의 편의용품의 비치·제공과 항상 깨끗하고 위생적 유지·관리토록 관리대장을 비치토록 하였고,
- 제11조 내지 제13조는 화장실의 개방과 개방화장실을 지정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편의위생용품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으며,
- 제14조 및 제15조는 이동화장실의 설치와 관리기준을 정하였고,
- 제16조 및 제17조는 유료화장실의 신고 및 준수사항을 규정하였으며,
- 제18조에는 위반사항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기준을 규정한 조례안으로 검토결과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4. 질의 및 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생략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(만장일치)

7. 기타사항 : 없음